



- ACVA 결정 물품  
관세조사 항목
- 과세가격(삭제)
  - 품목분류
  - 외환거래
  - 수입요건



구매자(화주)



구매대행 업자

연대납세의무



# 2026년 상반기

# 달라지는 관세행정

# 01 간이수출신고 허용 기준금액 상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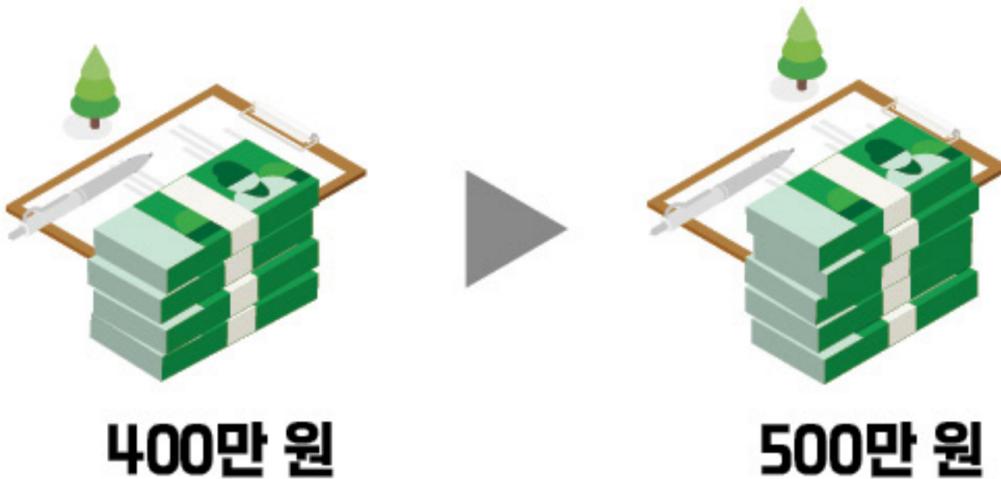
## 종 전

- 간이수출신고 허용 기준금액  
· 수출가격 400만원(FOB 기준) 이하

## 달라지는 내용

- 간이수출신고 허용 기준금액 상향  
· 수출가격 500만원(FOB 기준) 이하

## 간이수출 신고기준



## 효과

수출신고 편의성 제고,  
시간·비용 절감  
▼  
소상공인·중소기업  
수출 활성화

## < 사례 >

개정전	· S사의 K-팝 한정판 프리미엄 굿즈 수출가격은 450만원 상당으로 간소한 간이수출신고 대신 일반수출신고를 하게 되어 S사의 수출 관련 업무량이 늘어나고 비용이 증가됨
개정후	· 간이수출신고 허용 기준금액 500만원으로 상향되어 S사 상품 해외 판매 시 간이수출신고를 통해 수출 관련 업무량 감소 및 비용 절감

**기대효과** 간이수출 기준금액을 상향하여 고가 프리미엄 상품의 수출신고 편의성 제고, 신고 수수료 절감

**시행일** '26. 6. 26. 시행 예정(「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」제43조 개정)

# 02 풀필먼트 수출 확정가격 신고기간 연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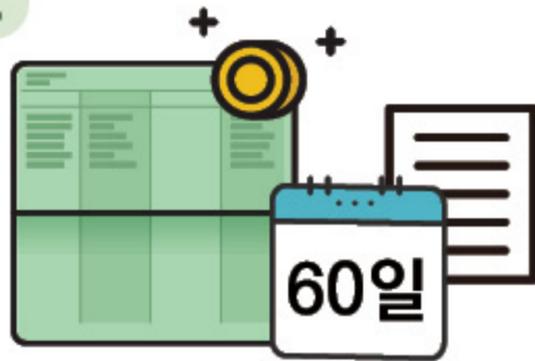
## 종 전

- 풀필먼트 수출 확정가격 신고기간
  - 판매금액 확정일 또는 판매대금 입금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기 전까지 실제 공급한 금액을 신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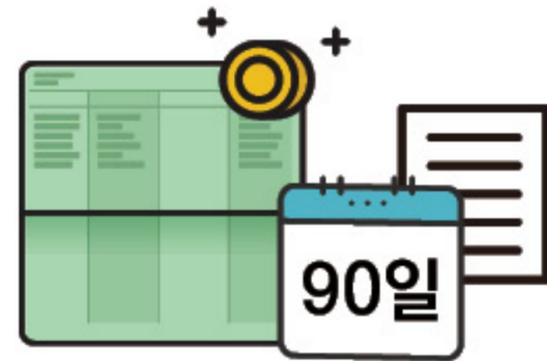
## 달라지는 내용

- 풀필먼트 수출 확정가격 신고기간 연장
  - 판매금액 확정일 또는 판매대금 입금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기 전까지 실제 공급한 금액을 신고

## 기존



## 개선



확정가격  
신고기한 연장

## < 사례 >

개정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풀필먼트 방식으로 수출 판매하는 A사의 물품은 다양한 거래조건*으로 판매되어 회계처리에 장기간 소요됨. A사가 판매대금 확정일·입금일로부터 60일 이내 확정가격을 신고하는데 현실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</li> <li>* 물품대금 지급 시 할인율 적용 및 누적 적립금 사용</li> </ul>
개정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풀필먼트 수출 시 확정가격 신고기간이 판매금액 확정일·입금일로부터 90일까지로 확대되어 A사의 확정가격 신고 부담이 경감되고, 실제 공급한 수출가격 신고로 외환거래 신고의무 위반을 예방할 수 있게 됨</li> </ul>

**기대효과** 풀필먼트 수출시 확정가격 신고에 필요한 충분한 기간을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부담이 경감되고, 정확한 수출대금 신고로 외환거래 신고의무 위반 사전 예방

**시행일** '26. 6. 26. 시행 예정(「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」제42조 개정)

# 03 보세공장 제품 과세방식 신청 시점 개선

## 종 전

- 혼용작업 신청기한
  - 내·외국물품 혼용작업 전까지
- 원료과세 적용 신청기한
  - 원재료를 사용신고하기 전까지

## 달라지는 내용

- 혼용비율 과세 적용 신청기한
  - 혼용작업 승인 신청을 수입신고 전까지 기한 확대
- 원료과세 적용 신청기한
  - 원료과세 적용 신청을 수입신고 전까지 기한 확대



## < 사례 >

개정전	· 외국 원재료를 수입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보세공장 M사는 혼용승인·원료과세 사전신청을 누락하여 추가 관세를 추징당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
개정후	· 신청기한이 수입신고 전으로 확대됨으로써 단순 사전승인 누락 실수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게 되어 M사의 조세부담 완화

**기대효과** 단순 사전 승인 누락에 따른 과도한 추징을 방지하고, 유리한 방식의 과세로 첨단·핵심 산업의 조세부담 완화 및 경쟁력 강화

**시행일** '26. 1. 1. 시행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(「관세법」제188조, 제189조 개정)

# 04 품목분류사전심사 신고불성실 가산세 감면

## 종 전

- 신고불성실 가산세 감면사유
  - 특수관계자간 거래에 대한 과세가격 사전심사 결과 통보 후 2개월 내 수정신고 등
  - <신설>

## 달라지는 내용

- 감면 사유 확대
  - [현행과 같음]
  -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를 통보받고 2개월 내 수정 신고(사전심사 신청 이후 해당 물품이나 동일물품을 수입신고한 경우로 한정)

## 신설



## < 사례 >

개정전	· A사는 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하였으나 긴급한 사정으로 우선 수입신고, 수입신고 후 고세율의 HS코드 품목으로 사전심사 결정되어 부족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담함
개정후	· A사는 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하였으나 긴급한 사정으로 우선 수입신고, 수입신고 후 고세율의 HS코드로 사전심사 결정되어도 부족세액을 2개월 내 수정신고 하는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감면함

**기대효과** 납세자 편의 증진,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 활성화로 HS불확실성 해소 등

**시행일** '26. 1. 1.시행(이 법 시행 전에 제86조제2항에 따라 사전심사 결과의 통지를 받아 시행 이후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적용, 「관세법」 제42조의2제1항제7호 신설)



# 06 중소기업확인서 서류 제출을 디지털 방식으로 원스톱 처리

## 종 전

□ 중소기업확인서 직접 제출

- 수출입기업이 수출환급 등 필요한 중소기업 확인서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발급받아 세관에 직접 제출

## 달라지는 내용

- 관세청-중소벤처기업부간 시스템과 데이터 연동으로 중소기업확인서 제출 간소화
- 세관 담당자가 중소기업 여부를 전자통관시스템에서 실시간 자동 확인

## 기존



## 개선



## < 사례 >

개정전	· A사는 수출환급 등 중소기업 우대혜택을 신청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발급한 <b>중소기업확인서*</b> 를 세관 방문·우편·이메일 등으로 제출해야 함 *중소기업벤처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신청·발급(유효기간 1년)
개정후	· A사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으면 세관담당자가 전자통관시스템에서 실시간 A사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직접 확인 가능함

**기대효과** 중소기업확인서 제출에 따른 민원인의 행정 부담 경감하고 정보시스템과 데이터의 연동으로 증명서의 신뢰도 확보

**시행일** '26. 4월 시행 예정

# 07 개인통관고유부호 유효기간 도입

## 종 전

- 부호의 관리
  - [신청유형] 신규, 변경(정보, 부호), 사용정지
  - [유효기간] 없음

## 달라지는 내용

- 개인통관고유부호 유효기간 신설, 미갱신 시 처리사항 신설
- [신청유형] 신규, 변경(정보, 부호), 사용정지, 갱신, 해지
- [유효기간] 1년



수입자 정보 현행화  
+  
개인정보 보호 강화

### < 사례 >

개정전	· A는 해외직구를 위한 개인통관고유부호의 발급정보가 변경이 되었음에도 수정하지 않고 유효기간 제한없이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 가능
개정후	· A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1년마다 갱신하면서 자신의 발급정보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현행화하게 됨

**기대효과** 수입자 정보 현행화와 개인정보 보호 목적에 기여

**시행일** '26. 1. 1. 시행 [「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·관리에 관한 고시」제16조 개정]

# 08 보세운송 운송수단 신고의무

## 종 전

- 보세운송시 운송수단
  - 운송수단을 정하여 신고한 경우 신고한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보세운송(위반시 과태료)
  - \*운송수단 미신고시 처벌 불가

## 달라지는 내용

- 운송수단 신고의무 신설
  - 신고한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보세운송(위반시 과태료)



운송수단 신고 필수

## < 사례 >

개정전	· A사는 보세운송 신고 후 보세운송에 사용될 운송차량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세운송을 하였으나, 운송수단 허위신고로 처벌받지 아니함
개정후	· B사는 보세운송 신고 후 보세운송에 사용될 운송차량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세운송을 하여 운송차량 미신고로 과태료를 부과 받음

**기대효과** 보세운송에 사용될 운송수단(차량) 신고의무를 명확히하여 밀수출입 등 통관질서 교란행위 방지

**시행일** '26. 1. 1. 시행(「관세법」제216조 개정)

# 09 구매대행업자 연대납세의무 성립요건 개선

## 종 전

- 구매대행업자 연대납세의무 요건(제19조)
  - 화주로부터 수입물품의 관세 등 수령
  - 과세가격 등의 정보를 거짓 제공

## 달라지는 내용

- 구매대행업자 연대납세의무 요건 개선
  - 화주로부터 수입물품의 관세 등 수령
  - <삭제>



구매시 수입물품의 관세를 함께 결제



연대납세의무  
구매대행업자가  
잘 못 납부된 관세에 대한  
책임을 함께 가짐

## < 사례 >

개정전	· 화주로부터 관세 등을 수령한 구매대행업자 A는 해외 판매자가 과세가격 등의 정보를 거짓제공하여 저가신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여 연대납세의무를 회피함
개정후	· 구매대행업자A가 관세 등을 화주로부터 미리 수령한 경우에는 구매대행업자 A는 연대납세의무를 지게 되어 부족세액을 납부해야 함

**기대효과** 불법 구매대행업자가 과세가격을 저가로 허위신고하여 관세 등을 탈루하는 행위를 억제하고, 부당하게 관세 등 부족분을 화주가 부담하게 되는 사례를 예방

**시행일** '26. 1. 1. 시행(이 법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경우 구매대행업자의 연대납부의무에 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름, 「관세법」 제19조제5항제1호다목 개정)